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임 미 연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임미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6조제1항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월정수당” 을 추가하였고,
- 안 제6조제2항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제3항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00923124 |
|----------|----------|

발의연월일: 2023. 11. 3.

발의자: 임미연, 이영빈, 이진환,  
도하석, 박정환, 김해철,  
장호섭,김장관,박종길,  
고명옥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u></p> <p><u>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 <p><u>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u></p> <p><u>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u>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u>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

## 【 관 계 법령 】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